

제2807호
2021. 2. 10.

발행인: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
편집인: 홍보 전 산 과 장 김 건 태
전화: 3396-4955
(<http://www.junggu.seoul.kr>)

선	기관의장
람	

구 보

● 고 시

제2021-14호 : 제3종시설물의 지정고시	2
제2021-18호 : 도로명주소 폐지고시	3
제2021-15호 : 도로명주소 폐지고시	4
제2021-17호 : 도로명주소 부여고시	5
제2021-16호 : 도로명주소 부여고시	6

● 공 고

제2021-93호 :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-9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공람공고	7
---	---

※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.
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<<http://www.junggu.seoul.kr>(행정정보→구보/입법예고) 클릭>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 ● 구보게재의뢰 TEL.(02)3396-4955 / FAX.(02)3396-9022/3
 ●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,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.
 ※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,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 ※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,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.

공람												
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

고 시

◎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1-14호

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

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 하였음을 고시합니다.

2021년 2월 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대상 시설물			지정사유	안전점검·안전조치에 관한 사항	비고
시설물 명칭	소재지	관리주체			
평화아파트	회현동1가 99-1	구분소유	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[별표 1의2]에 따른 지정대상	* 제3종시설물 지정·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 제출	
현대아파트 4동	신당동 840	현대아파트 관리사무소		*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다음연도부터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시설물관리계획 제출 *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다음반기부터 정기안전점검 실시	

-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1-18호

도로명주소 폐지고시

우리구 도로명주소 폐지사항이 있어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1년 2월 10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

도로명주소	폐지일자	폐지사유
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75길 23	2021.2.10	건물 말소
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18길 84	2021.2.10	건물 말소
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18길 86	2021.2.10	건물 말소
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193-12	2021.2.10	건물 말소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(☎02-3396-5943)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(www.junggu.seoul.kr)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9조 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,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도로명주소가 새로이 부여됩니다.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1-15호

도로명주소 폐지고시

우리구 도로명주소 폐지사항이 있어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1년 2월 10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

도로명주소	폐지일자	폐지사유
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84길 24-12	2021.2.10	건물 철거
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42길 55-1	2021.2.10	건물 철거
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14길 40	2021.2.10	건물 철거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(☎02-3396-5943)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(www.junggu.seoul.kr)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9조 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,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도로명주소가 새로이 부여됩니다.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1-17호

도로명주소 부여고시

우리구 건물 등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사항이 있어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새로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1년 2월 10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

종전주소 (지번주소)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고시일	도로명주소 부여기준
		도 로 명 고시일	도 로 명 부여기준
서울특별시 중구 흥인동 117-1번지	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75길 23	2021. 2. 10.	퇴계로75길의 기초번호로 부여
		2010. 6. 30	퇴계로를 중심으로 일련번호 부여
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144-34 외1필	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18길 86	2021. 2. 10.	퇴계로18길의 기초번호로 부여
		2010. 5. 26	퇴계로를 중심으로 일련번호부여
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55-19번지	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193-12	2021. 2. 10.	동호로의 기초번호로 부여
		2010. 4. 22	한강변의 옛 지명인 동호 지명을 인용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(☎02-3396-5943)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 (www.junggu.seoul.kr)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 고시 후 『도로명주소법』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『도로명주소법』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『도로명주소법』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.

-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1-16호

도로명주소 부여고시

우리구 건물 등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사항이 있어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새로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1년 2월 10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

종전주소 (지번주소)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고시일	도로명주소 부여기준
		도 로 명 고시일	도 로 명 부여기준
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132-23번지	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42길 55-1	2021. 2. 10.	다산로42길의 기초번호로 부여
		2010. 6. 30	다산로를 중심으로 일련번호 부여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(☎02-3396-5943)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(www.junggu.seoul.kr)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 고시 후 『도로명주소법』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『도로명주소법』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『도로명주소법』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.

공 고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1-93호

**세운재정비촉진지구 3-9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
공람·공고**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-365호(2006.10.26)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-107호(2009.3.19.)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-119호(2014.3.27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된 세운 재정비촉진지구 3-9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,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신청서가 제출되어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0조, 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관계서류를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65조 및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람·공고합니다.
2. 사업시행지구 내 토지등소유자와 그 밖에 정비사업과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2021년 2월 10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1. 사업개요

- 가. 사업명칭 :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-9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
- 나. 위 치 :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가 240-1 일대
- 다. 면 적 : 4,061.7㎡ (대지 3,061.5㎡ / 정비기반시설 1,000.2㎡)
- 다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 - 성 명 : 더센터시티제이차(주) 대표 박래영
 - 주 소 :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, 216호
- 라. 사업기간 :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72개월
- 마. 건축계획

대지면적(m ²)	건폐율(%)	용적율(%)	연면적(m ²)	층수 (지하/지상)	높이(m)	주용도	비고
3,061.5	66.32	910.21	46,307.21㎡	9층/26층	89.48m	공동주택	접수기준

2. 공람개요

- 가. 공고기간 : 2021.2.10. ~ 2021.2.24.(14일간)
- 나. 공람장소 : 중구청 도심재생과(☎02-3396-5754)
- 다. 공람내용 : 세운3-9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관계서류
- 라. 관계도서 : 공람장소에 비치
- 마. 공고방법 : 구보 게재

3. 기타사항

-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와 그 밖의 정비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는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,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게는 본 공고내용을 개별통지하나, 미 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통지를 갈음합니다. 아울러 공람도서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관계도서이며, 공람기간 중에 제출되는 의견 및 관계법령 검토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